

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

주식회사 네오위즈(이하 '당사')는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2조에 의거하여 당사와 주식회사 네오위즈플레이스 스튜디오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할 주주 확정을 위하여 2020년 10월 28일로 기준일을 정함을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5번길 14(삼평동, 네오위즈판교타워)

주식회사 네오위즈 대표이사 문 지 수
